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여러분

# 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·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며 제44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## 대상자 Check!

- ✓ (한국장학재단)취업 후 상환(든든)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다
- ✓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이다

**출국 전 해외이주·유학 신고하러 GO GO!**

## 신고방법

홈페이지(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)

로그인 ➔ 학자금대출 ➔ 학자금뱅킹 ➔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➔ 해외이주/유학신고

모바일 앱

로그인 ➔ 학자금대출 ➔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➔ 해외이주/유학신고

##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

	해외이주	해외유학
신고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로 이주(연고이주, 무연고이주, 현지이주)하려는 채무자</li> <li>•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신고 (증빙서류 불필요)</li> <li>• 상환의무 존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로 유학(연수, 연구, 워킹홀리데이, WEST프로그램, 해외인턴쉽, 해외봉사 등)하려는 채무자</li> <li>•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신고 (이름, 유학계획기간이 표시된 증빙서류 업로드)</li> <li>• 유학계획 연장 시 변경신고(연장신고)</li> <li>• 귀국 후 귀국신고</li> <li>*귀국신고까지 진행되어야 유학신고가 종결됩니다.</li> </ul>
상환 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</li> <li>- (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) 보증인 입보 후분할상환약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학 신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* 유지</li> <li>*상환기준소득(2020년도 1,323만원)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상환개시</li> <li>•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* 하지 않을 경우 전액상환 의무 부과</li> <li>*유학 연장시, 연장신고 필요</li> </ul>

※ 유학신고 시, 2020년 2학기(2020.7.9.) 부터 보증인 입보 폐지(소급불가)

## 문의처

콜센터 |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, 해외이주·유학신고 관련 문의(☎ 1599-2000)

홈페이지 | [www.kosaf.go.kr](http://www.kosaf.go.kr) ➔ 고객센터 ➔ 온라인 고객상담